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255
----------	------

2017. 11. 21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11월 13일 유찬종이숙자 의원 공동발의

나.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7회 정례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7. 11. 21.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유찬종 의원)

### 제안이유

- 좋은빛위원회의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광활성화 및 시민 볼거리 제공을 위해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의 영상표출시간을 완화하고자 함.
- 또한, 시민참여 확대 및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서울시 빛공해 사진 공모전 운영시 시상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

## □ 주요골자

가. 좋은빛위원회 부위원장의 선임방식 변경 (안 제12조, 제15조)

- 부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때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참석위원 중 호선으로 선임

나. 미디어파사드 영상표출시간 완화 (안 제24조)

- 예술, 문화콘텐츠 소비 활성화를 통한 관광산업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간당 20분에서 40분으로 완화

다. 좋은빛상 및 빗공해 사진 공모전 선정 및 시상 등 (안 제27조)

- 빗공해 사진 공모전 수상자에게도 시상 할 수 있도록 함.

## 3. 검토보고 요지(조정래 수석전문위원)

### □ 제출배경

-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좋은빛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미디어파사드(Media Facade) 장식조명’의 영상표출시간을 완화하며, ‘서울특별시 빗공해 사진·UCC 공모전’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유찬중·이숙자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2017년 11월 1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 □ 개정안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서울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빗공해 방지법」(이하 ‘법’) 제7조1) 및 「서울특

---

1) ① 시·도지사는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시행과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

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이하 '조례') 제10조~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좋은빛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운영중에 있으며 현재 총 35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활동 중에 있음 (붙임-1 참조).

○ 안 제12조 및 제15조는 위원장(도시계획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기 위촉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하던 것을 호선으로 부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게 변경하려는 것임.

- 이는 필요시 매 회의 때마다 부위원장을 선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원장 부재 시에도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을 담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음,

- 다만, 위원장 부재시 매번 다른 위원이 부위원장을 맡을 수 있는 바, 자칫 위원회 운영상 일관성과 균형감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음.

○ 다음으로 안 제24조제3항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의 영상표출시간 완화와 관련해서는 이를 시간당 20분에서 40분으로 증가(5분 연출 10분 소등 → 10분 연출 5분 소등)시키려는 것으로, 이는 최근 예술 및 문화콘텐츠의 소비 활성화와 연계한 관광산업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됨 (안 제24조제3항).

- 서울시 내부집계자료에 따르면 2004년 압구정 갤러리아백화점(강남구 압구정로 343)에 최초의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이 설치된 이래, '17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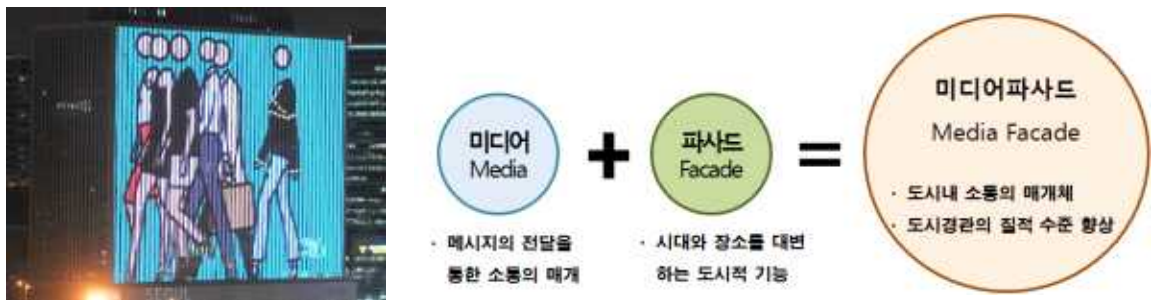
---

리구역의 지정·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현재 서울시에는 총 42개소가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집계됨.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이란 건축물과 조명이 일체화된 방식으로 LED 조명, 빔 프로젝트 등을 이용하여 밝기·색상을 조절하고 빛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조명방식으로 LED기술의 발전과 함께 증가추세에 있음.



### <미디어파사드의 개념>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14.7월 조례 제13조<sup>2)</sup>(현행 제22조)의 개정을 통해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을 신설·개량·증설하는 경우 조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심의를 받게 하였으며, ’14.12월에는 미디어파사드 관리 계획과 함께 설치 기본원칙, 지역별 허용기준 등 세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고, ’15.4월에는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하여 조명계획 수립기준을 신설하는 등 미디어파사드 관리제도를 꾸준히 정비해 왔음.

- 그럼에도 미디어파사드는 전광판(광고조명)에 비해 설치규모( $m^2$ )에 제한이 없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조명시설이므로, 연

2) ① 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조명기구를 신설, 개량, 증설하려는 자는 조명기구를 설치하기 전에 법 제15조의 조명기구의 설치·관리기준과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빛방사허용기준 및 제21조의 야간경관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조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조명계획 중 별표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출시간 완화에 따른 빛공해 발생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음 (붙임-2 참조).

- 조례 제24조제3항 단서조항<sup>3)</sup>에 따라 몇몇 시설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출 시간을 연장한 바 있으며<sup>4)</sup>, 그에 따른 빛공해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는 바 연출시간 완화에 따른 빛공해 요소보다 예술·문화콘텐츠 활성화 및 관광수요 창출의 효과가 클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점등시간 조정은 검토 가능하다고 판단됨.
- 마지막으로 안 제27조는 빛공해 공모전 입상작에 대해서도 상금·상패·메달 등을 시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빛공해 방지를 위한 시민참여 확대와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됨.
- 서울시는 현재 조명박물관과 공동으로 빛공해 사진·UCC 공모전을 주최하고 있는데(붙임-3 참조), 시민의 관심도가 낮은 상황임에 따라 상금·상패·메달 등을 수여하여 공모전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파악됨.
- 최근 서울시내 빛공해 피해 건수는 증가추세<sup>5)</sup>에 있으며, 이는 빛공해 정책의 대시민 인지도가 부족한 것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는 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됨.

## □ 결 론

- 종합하면, 이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의 연출시간을 확대하며, 기타 빛공해 방지에 대한 시민참여

3) “다만,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와 국내외 행사 또는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4) 현행 조례 제24조 단서조항에 따라 완화받은 사례로는 세종문화회관(시간당 50분), 서울스퀘어(40분), 롯데월드타워 행사용 콘텐츠(시간당 50분) 등이 있음.

5) ‘13년(778건), ‘14년(1,571건), ‘15년(1,216건), ‘16년(2,043건)

와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검토가능하다고 사료됨.

- 다만, 미디어파사드의 경우 점등시간을 현행 20분에서 40분으로 확대할 경우 야간경관에 미치는 영향 또한 증가하게 되므로, 조례 제21조6)에 따른 야간경관계획 및 야간경관가이드라인 수립(재정비)시 운용실태 분석에 기초한 정교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겠음.
- 특히 야간의 과도한 빛노출은 건강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으며, 한국은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2위의 빛공해 국가라는 평가7)를 받고있는 상황에서 점등시간 연장보다는 콘텐츠의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출석위원 전원 찬성)

---

6) 시장은 옥외 조명기구로부터 발산되는 눈부심, 침입광 등 빛공해를 방지하고 좋은빛을 형성하기 위하여 야간경관계획 및 야간경관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7)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스(Science Advances)’ 2016.6월호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참석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제3항 중 “20분”을 “40분”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좋은빛상·빛공해 공모전 입상작 선정 및 시상 등)

- ① 시장은 빛공해 방지 및 우수 장식조명 형성에 기여한 바가 큰 자와 빛공해 사진 공모전 입상작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시상대상자에게 상금, 상패, 메달 등을 수여할 수 있다.
- ③ 좋은빛상·공모전 입상작 선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위원회의 구성)</p> <p>① (생략)</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으로서 하고, 부위원장은 <u>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u></p> <p>③~④ (생략)</p> <p>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p> <p>① (생략)</p> <p>② <u>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③ (생략)</p> <p>제24조(점등 및 소등)</p> <p>① ~ ② (생략)</p> <p>③ 건축물, 교량, 구조물 등의 경관을 목적으로 설치한 장식조명은 일몰 30분 후에 점등하고 소등은 23시 이내로 하며,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의 영상 연출시간은 시간당 <u>20</u></p>	<p>제12조(위원회의 구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참석위원</u> <u>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u></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24조(점등 및 소등)</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u>40분</u></p>

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와 국내외 행사 또는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7조(좋은빛상 선정 및 시상 등)

① 시장은 빛공해 방지 및 우수 장식조명 형성에 기여한 바가 큰 자를 선정하여 좋은빛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좋은빛상 선정 및 시상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좋은빛상·빛공해 공모전 입상작 선정 및 시상 등)

① 시장은 빛공해 방지 및 우수 장식조명 형성에 기여한 바가 큰 자와 빛공해 사진 공모전 입상작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상대상자에게 상금, 상패, 메달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좋은빛상·공모전 입상작 선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